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2년 9월 2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병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09. 02.

발의의원 : 하병문, 김정옥,
박소영, 박종필,
이중환, 손한국,
허시영, 류종우,
권기훈, 김태우
의원(10명)

1. 개정 이유

- 로컬푸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명과 정의 등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인증 등 사업지원의 근거를 확대해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로컬푸드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로컬푸드 정의(안 제3조)
- 다. 로컬푸드 기본요건, 참여주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마.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로컬푸드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아.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면서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것을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

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식품의 지역 내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제휴푸드”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 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가 직매장 납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가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납품하는 농업인일 것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으로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일 것
5. 시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취급할 것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일 것
7. 제휴푸드를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제휴푸드 판매면적은 100분의 20 이하일 것

제5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과 신뢰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생산자를 이해하여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로컬푸드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녹색성장,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목표 및 육성·지원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참여주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휴푸드와 인근지역 로컬푸드 판매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 가.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공동작업장 등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 나.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 다. 참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원 사업
- 라.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유통 및 소비지원과 홍보마케팅 사업

2.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 가.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교육
- 나. 로컬푸드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검사비 등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 가. 품목별 안정 생산 등을 위한 소규모 농가조직화 지원 사업
- 나. 소규모 농가 및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직거래 사업
- 다. 제휴푸드 및 인근지역의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직거래 장터, 상설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3.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구·군 간의 정책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로컬푸드의 공급을 위하여 대구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매장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매장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법 제112조의 5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법인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로컬푸드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로컬푸드 및 직매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4.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교육·홍보 지원
6. 학교, 공공기관 등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생산 및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로컬푸드의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산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의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식품임을 나타내는 대구광역시의 지명을 사용해야 하고, 필수 표기사항(농식품의 명칭·무게·성분·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표기사항은 협의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의 경우 1년 이내에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⑧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5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 등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 시장은 로컬푸드가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군사시설
3.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호의 각종학교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정시설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급식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

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